고 성 군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524호 2022. 5. 20.(금)

입 법 예 고

	1	1	I		
회					
람					

발행: 고성군, 편집: 군정혁신담당관(670-2642, 행정 2642)

고성군 공고 제2022-913호

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고성군 조례·규칙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5. 20. 고 성 군 수

1. 개정이유

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 서면심의(1차) 결과 보완 및 권고사항 반영,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전반적 내용을 담아 아동권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2.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

- 가. 목적의 자구를 수정함(안 제1조)
- 나. 권리의 존재는 헌법 해석 및 법률(조약)해석과 관련되므로, 조례에서 '아동의 권리'를 특정 법률이나 조약에 근거하여 도출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삭제 (안 제2조)
- 다. 아동친화도시 추진 체계를 규정하고 '노력하여야 한다'를 '해야 한다'로 변경 함(안 제3조~제13조)
- 라.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 삭제 합(제15조)
- 마. 위원회 기능을 상세히 규정함(제16조)
- 바. 위원회 구성을 규정함(제17조)
- 사.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(제18조)
- 아. 위원의 해촉을 규정함(제19조)
- 자.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함(제20조)
- 차. 위원회 운영을 규정함(제21조)
- 타. 위원회 간사를 규정함(제22조)

- 카. '아동권리지킴이'를 아동권리 독립적 대변인 성격인 '옴부즈퍼슨'으로 규정함 (제23조~제27조)
- 파. 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계획, 실시를 규정함(제28조~제29조)

3. 의견 제출

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는 2022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(참조: 교육청소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여부와 그 이유)
- 2) 성명(법인 및 기타 기관·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나. 의견 제출처: 교육청소년과 아동친화담당
 - 1) 주소: (52943)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, 고성군청 교육청소년과
 - 2) 전화: (055)670-2623, 팩스: (055) 670-4659

다. 제출 방법 및 문의처

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교육청소년과 아동친화담당(☎055-670-2623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성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아동"이란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.
- 2. "아동친화도시" 란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.
- 3. "옴부즈퍼슨"이란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을 기반으로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아동의 권리적 관점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변인을 말한다.
- 제3조(군수의 책무) 고성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,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등을 마련하며,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.
- 제4조(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)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.
 - 1. 아동이 인종, 종교, 성별, 나이, 학력, 신체조건, 장애, 병력, 가족형태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.
 - 2.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.
 - 3. 아동이 교육, 의료, 여가, 문화생활, 노동,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 - 4.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고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.

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

- 제5조(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)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.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.
 - 1.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 - 2.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
 - 3.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
 - 4.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③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고성군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,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.
- 제6조(아동의 참여보장)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,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.
- 제7조(아동의 건강증진)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- 제8조(아동안전을 위한 조치) 군수는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.
 - 1.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
 - 2.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
 - 3. 아동 유해환경 사전예방활동 및 안전교육
- 제9조(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) 군수는 공공시설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나 사회복지시설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 - 1. 아동의 보행 편의
 - 2. 아동의 안전 확보
 - 3.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 공간 확대
 - 4.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
 - 5.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 및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
- 제10조(아동의 교육·여가·문화생활) 군수는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수 있도록 교육·여가·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

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
- 제11조(아동권리 실태조사)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,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다만, 실태 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해야 한다.
 - ② 군수는 실태조사 분석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- 제12조(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)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아동, 아동의 보호자, 아동시설 관계자, 공무원, 의료 및 법률 관계자,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.
 - ② 군수는 아동권리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.
- 제13조(아동참여기구) ① 군수는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고성군 아동참여기구(이하 "아동참여기구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아동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, 토론 및 의견 제출
 - 2. 아동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활동
 - ② 아동참여기구는 주요 활동 내용에 따라 명칭을 달리 사용할 수 있다.
 - ③ 아동참여기구는 아동으로 구성한다.
 - ④ 군수는 아동참여기구에서 제안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 - ⑤ 그 밖에 아동참여기구의 구성 ·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- 제14조(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)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

- 제15조(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)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1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.
 - 1. 기본계획의 수립 · 시행에 관한 사항
 - 2.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이나 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
 - 3. 아동권리 모니터링, 아동의 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 - 4.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

- 5.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- 제1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회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군수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 -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군수 및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 - 1. 고성군의회 의원
 - 2.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가
 - 3. 아동 관련 기관·단체 대표
 - 4. 아동보호자 대표
 - 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제18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-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 가으로 한다.
- 제19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
 - 2.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 - 3.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제2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21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 - ② 정기회의는 상·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임 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제22조(간사)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

제4장 옴부즈퍼슨

제23조(옴부즈퍼슨 운영) 군수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"고성군 옴부즈퍼슨"(이 하 "옴부즈퍼슨"이라 한다)을 위촉하여 운영해야 한다.

제24조(옴부즈퍼슨 기능) 옴부즈퍼슨은 다음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- 1.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
- 2. 아동권리에 관련된 정책, 제도, 법령, 서비스 개선 도모
- 3.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, 모니터링 및 개선안 제안
- 4. 그 밖에 아동권리와 관련된 사항

제25조(옴부즈퍼슨 구성) ①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.

- ②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- 1. 아동 인권문제 법률 전문가
- 2.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
- 3. 그 밖에 아동 관련 분야에 풍부한 식견이 있는 사람

제26조(옴부즈퍼슨 임기)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- 제27조(옴부즈퍼슨 해촉) 군수는 옴부즈퍼슨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- 2.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
 - 3.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 득을 취한 경우
 - 4.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그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
 - 5.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옴부즈퍼슨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

제5장 아동영향평가

제28조(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계획)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.
- 1.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- 2. 아동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
- 3. 그 밖에 군수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(아동영향평가의 실시)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
 - 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 ·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.
 - 1.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·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
 - 2.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
 - 3.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업
 - 4.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.
 - 1. 군 행정 내부의 운영 · 관리에 관한 사항
 - 2. 해당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
 - 3.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
 - ③ 군수는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아동복지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아동"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- 2. "아동복지" 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·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·사회적·정서적 지원을 말한다.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,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 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유무,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 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
 -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.
- 제11조의2(아동정책영향평가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평가(이하 "아동정책영향평가"라 한다)하고,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·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.
- ③ 그 밖에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,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유엔아동권리협약 (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)

- 제1조: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.
- 제2조: 아동은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으며,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.
- 제3조: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.
- 제4조: 국가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.
- 제5조: 부모를 비롯한 아동을 보호하는 성인들은 아동의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적절함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.
- 제6조: 아동은 생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가 있으며, 국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.
- 제7조: 아동은 국적과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,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.
- 제8조: 국가는 국적, 이름, 가족관계를 포함한 아동의 신분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.
- 제9조: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은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하며, 분리된 경우 부모와 연락을 지속할 권리가 있다.
- 제10조: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, 국가는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인도적인 방법으로 입국이나 출국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어야 한다.
- 제11조: 아동이 불법으로 다른 나라에 보내졌을 경우 국가는 아동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.
- 제12조: 아동은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, 아동의 의견은 존중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.
- 제13조: 아동은 말이나 글, 예술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, 아동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해롭지 않은 한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이야기 할 수 있다.
- 제14조: 아동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양시에 따라 행동하며,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.
- 제15조: 아동은 단체와 모임에 가입할 수 있고, 평화적 집회에 참가할 수 있다.
- 제16조: 아동은 사생활과 가족, 집, 통신 등에 불법적 간섭이나 공격을 받지 않아야 한다.
- 제17조: 아동은 신문이나 방송, 잡지를 통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,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.
- 제18조: 부모는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가지며, 국가는 부모가 아동의 양육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.
- 제19조: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, 방임,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, 국가는 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도움과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.

- 제20조: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아동에게 안전하지 않아 부모와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.
- 제21조: 아동이 입양되어야 할 때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. 입양을 결정하는 곳은 믿을 만한 정부기관이어야 하며 부모나 친척 등 아동과 관련된 성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제22조: 난민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며, 정부와 여러 단체들은 아동이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제23조: 장애아동은 존엄성 보장·자립촉진·활발한 사회참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 한 보살핌, 교육,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.
- 제24조: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, 깨끗한 환경, 의료서비스. 안전한 물,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받아야 한다.
- 제25조: 아동이 보호·치료의 목적으로 시설에서 생활하게 된 경우, 정부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치료 및 환경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.
- 제26조: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.
- 제27조: 아동은 신체적·지적·정신적·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.
- 제28조: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. 초등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, 학교 규율은 아동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.
- 제29조: 교육은 아동의 인격과 재능 그리고 정신적·신체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. 또한 교육을 통해 인권과 자유 이해와 평화 정신을 배우고 다른 문화 존중, 관용, 성(性)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책임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.
- 제30조: 소수집단 또는 선주민 아동은 그들의 문화, 언어, 종교를 가질 권리가 있다.
- 제31조: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,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및 예술과 문화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- 제32조: 아동은 경제적 착취와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. 또한 교육에 방해가 되거나 몸과 마음에 해로운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.
- 제33조: 아동은 유해한 물질(마약, 향정신성 물질)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.
- 제34조: 아동은 모든 형태의 성매매, 성착취, 성학대로부터 보호받고 도움받을 권리가 있다.
- 제35조: 아동은 유괴나 매매, 거래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.
- 제36조: 아동은 자신들의 복지를 해치는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.
- 제37조: 아동에게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큰 벌을 내릴 수 없으며, 아동을 고문해서도 안된다. 아동을 체포하거나 감금하는 일은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되어야 하며, 감금

되어 있는 동안 가족과 연락할 권리가 있다.

- 제38조: 15세 미만 아동은 절대로 군대에 입대해서는 안 되며, 전쟁지역의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.
- 제39조: 유기, 학대, 착취, 고문, 무력분쟁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아동은 신체적·심리 적 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해 특별한 보살핌과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.
- 제40조: 범죄에 기소된 아동은 그들의 연령이나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존엄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.
- 제41조: 만약 국가의 법들이 이 협약의 조항들보다 아동을 잘 보호한다면, 그 법들은 유지되어야만 한다.
- 제42조: 모든 아동과 성오인은 본 협약의 권리들을 알아야만 한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ㅣ자치법규명: 고성	군 아동	F친화.	도시	조성에	관한	조례	전부개정조례	안
○ 성명(단체명):								
○ 주 소:								
○ 전화번호:								
○ 의견 내용(찬·	반 의기	견과 그	그 이	유)				
개정안	찬반 찬성	의견 반대	_	수정안			수정사유	
_								

개정안	산반의선		수정안	수정사유	
/11/8 긴	찬성	반대	T78 T	7 787111	